

하나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

1. 개정시행일: 2015. 8.

2. 개정내용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 3 조(서비스 종류)</p> <p>이 약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각종 조회, 자금이체, 신규계좌 개설, 대출실행, 자동이체등록, 공과금수납, 사고신고 등이며 은행은 필요한 경우 이를 추가, 변경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한다.</p> <p>제 16 조 (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)</p> <p>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의 영업점 또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은행이 변경, 해지처리를 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은 변경, 해지된다.</p> <p>② 각종 비밀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<u>해당 서비스를 통하여</u>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제 18 조 (약관변경)</p> <p>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,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변경예정일 30 일 이전까지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개별통지하고 동시에 은행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변경예정일 전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서비스를 해지 할 수 있음을 알리고, 그 밖에는 은행의 홈페이지에 <u>게시하여 알린다.</u></p>	<p>제 3 조(서비스 종류)</p> <p>이 약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각종 조회, 자금이체, 신규계좌 개설, 대출실행, 자동이체등록, 공과금수납, 사고신고 등이다. (삭제)</p> <p>제 16 조 (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)</p> <p>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의 영업점 또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은행이 변경, 해지처리를 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은 변경, 해지된다.</p> <p>② 각종 비밀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<u>전자적 장치를 통하여</u>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제 18 조 (약관변경)</p> <p>①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예정일 30 일 전까지 <u>은행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한다.</u></p> <p>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할 경우 은행은 그 내용을 서면, 전자우편, 휴대폰 문자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<u>변경예정일 30 일 전까지 개별통지 한다.</u></p>	<p>일방적인 서비스 변경. 중지 조항 삭제</p> <p>비밀번호 변경 매체 변경</p> <p>약관 변경 절차 상세화(이용자에게 통지하는 수단 구체적 나열 포함)</p>

하나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대비표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② 은행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해 약관의 변경내용을 게시하거나 통지할 경우, "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"는 내용을 통지한다.</p> <p>③ 은행은 이용자가 제 1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</p> <p><부칙> 제 2 조 (경과조치)</p> <p>① 이 약관 개정 전 보안 2 등급 고객의 경우 개정 전 자금이체한도를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보안 2 등급 <u>고객이 아래</u> 대상거래를 한 때에는 자동적으로 개정 된 보안 2 등급 자금이체 한도로 변경된다.</p> <p>- 대상거래 : 전자금융 재신규, 이체한도변경 및 제신고(비밀번호 변경 등), 출금계좌 추가등록, 보안카드 재발급</p>	<p>③ 제 1 항의 게시물 또는 제 2 항의 통지에는 "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" 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한다.</p> <p>④ 이용자가 제 2 항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은행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날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</p> <p><부칙> 제 2 조 (경과조치)</p> <p>① 이 약관 개정 전 보안 2 등급 고객의 경우 개정 전 자금이체한도를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보안 2 등급 <u>고객이 영업점에서 아래</u> 대상거래를 한 때에는 자동적으로 개정 된 보안 2 등급 자금이체 한도로 변경된다.</p> <p>- 대상거래 : 전자금융 재신규, 이체한도변경 및 제신고(비밀번호 변경 등), 출금계좌 추가등록, 보안카드 재발급</p>	<p>자금이체 한도가 자동변경 되는 경우를 명확화</p>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: 적용